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61

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서삼석·정동영·조인철

임호선 • 이기헌 • 염태영

이용선 • 박수현 • 안도걸

윤준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, 과도한 기부금 모집 및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기부를 금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·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기부금 주체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 시스템 또한 '고향사랑e음'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고향사 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,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기준을 갖춘 기관

중에서 조례로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8조, 제12조 및 제14조).

법률 제 호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사람으로부터"를 "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사람에게"를 "사람, 법인 또는 단체에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사람에"를 "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에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사람에게"를 "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"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정보시스템을"을 "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사람"을 "자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개인별"을 "기부자별"로 한다.

제1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제14조제1항제1호 중 "주민으로부터"를 "주민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	
1. "고향사랑 기부금"이란 지방	1
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	
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	
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	
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	
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	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
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	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
하는 금전을 말한다.	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
	<u>로부터</u>
2. "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"이	2
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, 정	
보통신망의 이용, 그 밖의 방	
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	
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	
줄 것을 다른 <u>사람에게</u> 의뢰	<u>사람, 법인 또는</u>
•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	단체에
말한다.	
제4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	제4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
주체 및 대상) ① 지방자치단	주체 및 대상) ①
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	

민이 아닌 <u>사람에</u>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·접수할수 있다.

② · ③ (생 략)

제6조(기부·모금 강요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업무·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(생략)

제8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) ① 고향사랑 기부 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 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 거나, 제12조에 따른 <u>정보시스</u> 템을 통한 전자결제 · 신용카드 · 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,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 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<u>사람</u> (이하 "기부자"라 한다)에게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

<u>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</u>		
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		
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		
단체에		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	
제6조(기부·모금 강요 등의 금		
ス) ①		
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		
<u>.</u>		
② (현행과 같음)		
제8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		
및 상한액) ①		
<u>정보시스</u>		
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		
<u>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를</u>		
②		
عر		
<u></u>		
·		

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- ③ <u>개인별</u>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 다.
- ④ (생 략)
- 제12조(제도의 홍보·연구 및 지 원) ① · ② (생 략)
 -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업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- 제14조(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 자에게 반환하고, 교부된 영수 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 - 1.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<u>주민으로부터</u>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

	· ③ <u>기부자별</u>
	④ (현행과 같음)
제	12조(제도의 홍보・연구 및 지
	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	③
	<u>다만, 지방자치단체의</u>
	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
	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지
	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탁기관
	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제	<u> </u>
''	반환) ①
	 1
	1
	<u>주민 또는 주된</u>
	<u>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</u>

	자치단체에 있는 법인 또는
	단체로부터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